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과 정비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별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3827호, 2023. 10. 18. 공포)됨에 따라 체계적인 빈집 관리를 위해 빈집 등급 산정기준 개편, 빈집모니터링 실시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빈집 등급체계를 기존 4등급에서 3등급으로 개편하여 빈집을 활용, 관리, 정비대상으로 구분·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 나. 전국 빈집 모니터링체계 신설하여 전국 단위 빈집 관련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도심주택공급협력과)로 2024년 3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검토의견)

나.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전화 044-201-4943, Fax : 044-201-5612)